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			
184~184p 번호 : 16	해설	㉠ 보험가액의 20% = 43,560,000원 × 20% = 8,712,000원		㉠ 보험가액의 20% = 37,750,000원 × 20% = 7,550,000원			
		수정 사유		해설 오류			
185~185p 번호 : 18	해설	수정 전	[정답] (1) A농지의 ① 피해율, ② 보험금과 B농지의 ③ 피해율, ④ 보험금 ① A농지의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÷ 평년수확량 · 평년수확량 = 실제경작면적 ×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= 18,000㎡ × 0.85kg/㎡ = 15,300kg · 피해율 = (15,300kg - 4,100kg - 0kg) ÷ 15,300kg = 0.7320 = 73.20% ※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(특약 제2조 제2항). ② A농지의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 ×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 · 보험가입금액 = 가입수확량 × 가입가격 = 15,300kg × 1,400원/kg = 21,420,000원 ※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%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. · 보험금 = 21,420,000원 × (73.20% - 20%) = 11,395,440원 ③ B농지의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÷ 평년수확량 · 평년수확량 = 실제경작면적 ×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= 13,500㎡ × 0.84kg/㎡ = 11,340kg · 피해율 = (11,340kg - 4,000kg - 0kg) ÷ 11,340kg = 0.6472 = 64.72%				
		수정 후	[정답] (1) A농지의 ① 피해율, ② 보험금과 B농지의 ③ 피해율, ④ 보험금 ① A농지의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÷ 평년수확량 · 평년수확량 = 실제경작면적 ×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= 18,000㎡ × 0.85kg/㎡ = 15,300kg · 피해율 = (15,300kg - 4,100kg - 0kg) ÷ 15,300kg = 0.7320 = 73.20% = 70%(※ 최대 인정피해율) ※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(특약 제2조 제2항). ② A농지의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 ×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 · 보험가입금액 = 가입수확량 × 가입가격 = 15,300kg × 1,400원/kg = 21,420,000원 ※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%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. · 보험금 = 21,420,000원 × (70% - 20%) = 10,710,000원 ③ B농지의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÷ 평년수확량 · 평년수확량 = 실제경작면적 ×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= 13,500㎡ × 0.84kg/㎡ = 11,340kg · 피해율 = (11,340kg - 4,000kg - 0kg) ÷ 11,340kg = 0.6472 = 64.72%				
		수정사유	해설 오류				
257~257p 번호 : 7	정답	수정 전	[정답] <table><tr><td>양배추</td><td>① 재정식보장 - 재정식종료 시점(단,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) ② 경작불능보장 - 수확개시 시점</td></tr></table>			양배추	① 재정식보장 - 재정식종료 시점(단,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) ② 경작불능보장 - 수확개시 시점
양배추	① 재정식보장 - 재정식종료 시점(단,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) ② 경작불능보장 - 수확개시 시점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수정 후	[정답]		
	양배추	① 재정식보장 - 재정식종료 시점(단,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) ② 경작불능보장 - 수확개시 시점 ③ 수확감소보장 - 수확기 종료 시점(단,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) ·극조생 : 조생 : 이듬해 2월 28일 ·중생 : 이듬해 3월 15일 ·만생 : 이듬해 3월 31일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
수정사유	정답 오류			
259~259p 번호 : 10	해설	수정 전	[해설] (1) 보험가입기준 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. ② 다만,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.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,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.	
		수정 후	[해설] (1) 보험가입기준 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. ② 다만,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.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,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.	
		수정사유	해설 오류	
331~332p 번호 : 16	해설	수정 전	[정답]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: 27,160,000원 [해설]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다. 잔존보험가입금액 = 42,900,000원 - 15,731,643원 = 27,168,357원 = 27,160,000원(※만원 미만 절사)	
		수정 후	[정답]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: 21,440,000원 [해설]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다. 잔존보험가입금액 = 37,180,000원 - 15,731,643원 = 21,448,357원 = 21,440,000원(※만원 미만 절사)	
		수정사유	해설 오류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34~334p 번호 : 18	해설	수정 전 [정답] (1) 수확감소에 따른 A농지 ① 피해율, ② 보험금과 B농지 ③ 피해율, ④ 보험금 ① A농지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÷ 평년수확량 ·평년수확량 = 실제경작면적 ×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= 16,000㎡ × 0.85kg/㎡ = 13,600kg ·피해율 = (13,600kg - 4,000kg - 0kg) ÷ 13,600kg = 0.70588 = 70.59% ※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(특약 제2조 제2항). ② A농지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 ×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 ·보험가입금액 = 가입수확량 × 가입가격 = 13,600kg × 1,300원/kg = 17,680,000원 ※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%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. ·보험금 = 17,680,000원 × (70.59% - 20%) = 8,944,312원	
		수정 후 [정답] (1) 수확감소에 따른 A농지 ① 피해율, ② 보험금과 B농지 ③ 피해율, ④ 보험금 ① A농지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÷ 평년수확량 ·평년수확량 = 실제경작면적 ×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= 16,000㎡ × 0.85kg/㎡ = 13,600kg ·피해율 = (13,600kg - 4,000kg - 0kg) ÷ 13,600kg = 0.70588 = 70.59% = 70%(※ 최대 인정피해율) ※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(특약 제2조 제2항). ② A농지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 ×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 ·보험가입금액 = 가입수확량 × 가입가격 = 13,600kg × 1,300원/kg = 17,680,000원 ※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%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. ·보험금 = 17,680,000원 × (70% - 20%) = 8,840,000원	
		수정사유 해설 오류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